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5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입주대상자,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 임대계약, 입주제한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임대기간 및 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주 소:<br>○성 명:<br>○연락처: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임대아파트”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2.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96번길 47에 위치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등)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독신여성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인원은 2명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대표

자의 추천과 다음 각 호의 입주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시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 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순위일 때에는 연령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저임금근로자

③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려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
2.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람
5.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직한 사람
6.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7. 그 밖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제11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기간 만료 후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회) ①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근로자임대아파트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과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 등)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자 소속의 각 사업장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잔여 임대기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 (제10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보 증 금     | 작은방 38,000원<br>큰 방 50,000원 | 입주 시 예치<br>(임대료 2개월분) |
| 임 대 료     | 작은방 19,000원<br>큰 방 25,000원 | 매월 납부                 |
| 그 밖의 공공요금 | 호실별 입주자<br>개인별 균등징수        |                       |

※ 세대별 전용면적 : 30.69㎡(작은방 7.29㎡, 큰방 9.36㎡, 공용 14.04㎡)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div style="margin-left: 40px;"> <input type="checkbox"/> 근로복지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제28(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li> <li>○ 제29(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세부내용 별지 작성”</div> |
| 관련조례<br>정비대상 |                                                                                                                                                                                                                                                                                       |
| 관련자료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경 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과장 홍 성 철